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4
----------	-----

2019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

나. 발의일자 : 2019년 3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라. 상정결과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4월 2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채인묵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문맥이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22조제2호)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 (2)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기 타: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장애”라는 표현을 수정하고, 문맥이 어색한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찬성자 11명)이 발의하였음.

- 현행 조례 제22조는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 제2호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의 문구에 ‘장애’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동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비준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¹⁾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②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2015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요건을 규정한 제8조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라는 문구에서 ‘장애’라는 표현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라고 변경한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사항(2015.12.31. 국회 운영위원회)

개 정 전	개 정 후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08.05.03.). 2012년 12월 기준 비준국 126개국.

개 정 전	개 정 후
<p>만, 위원이 <u>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p>	<p>만, 위원이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u>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p>

심신의 장애를 사유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유에 따라 ‘장애’ 표현의 변경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부정적 인식을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역사도시서울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상위법령 위배 및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한다고 밝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인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24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 (1명)

찬 성 자 : 유 용, 이태성, 이성배, 이광호,
김경우, 이현찬, 김정환, 김소양,
권영희, 임종국, 김동식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문맥이 어색한 문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2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u>아니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며</u>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u>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u>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u> 3. ~ 4.(생략) 	<p>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3. ~ 4.(현행과 같음)